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하며, 해지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우체국장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 ④ 상품우대이율 :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최고 연 0.5%p 적용
 1.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연 0.3%p
 2. 신규 가입 시 노란우산을 보유한 경우 연 0.1%p
 3. 노란우산으로 자동이체 한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4.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가입자우대	○ 소상공인 · 소기업 대표자	0.3
거래우대	○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 - 신규 가입 시 노란우산 보유	0.1
	○ 노란우산 자동이체 실적 우대 * 신규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0.1
	○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우대 - 이 예금 가입기간* 동안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200만원 이상 시 * 신규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0.1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가입자 우대」는 신규 가입일 현재 가입자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일 경우
 2. 「노란우산 가입자 우대」는 신규 가입 시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을 보유한 경우
 - ※ 노란우산은 중소기업 중앙회, 은행, 우체국을 통해 가입한 경우 모두 포함이며 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적용
 3. 「노란우산 자동이체 실적 우대」는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노란우산으로 자동이체 한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4.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우대」는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 수시입출식 예금 평잔 기준
⇒ 평잔 = 수시입출식 예금 월적수의 합 / 유지기간
 -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이 신상품 가입고객의 고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잔 실적 적용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1.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수시입출식예금 평잔 우대’ 항목은 우대이율 적용 여부가 만기해지 시점에 결정되므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해당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 단,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 단,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③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특별중도해지】

- ①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결혼, 출산, 입원, 이민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2.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3.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4.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5.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6.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 【분할해지】

- ① 신규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당시의 약정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단,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②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신규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 ③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 ③ 이 예금의 판매한도는 3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